

第 38, 39, 40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94. 5. 19 ~ 24. / 6. 14. ~ 15. / 7. 4. ~ 6.)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3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94. 5. 19. ~ 5. 24.)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994 • 5 • 통권 제37호

I.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II.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3

III. 부 록

1. 의사일정 21

2. 1996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안 23

3. 19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4년 5월 19일 (목요일) 14시 00분

議事日程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1996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안
3. 19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장의 건
3. 1996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19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회: 의사과장 강인형)

(14시 00분 개식)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38회-제1차]

(14시 03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1. 경과보고

(14시 05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 5월 1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1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 제37회 임시회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결안건을 '94년 4월 1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그 중 2건은 같은 날짜에 도의회에 제출되어 '94년 4월 27일 제1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은 수정의결되었고,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금회 처리하실 안건으로는 '96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안과 '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며 기타 사항으로는 '94년 5월 19일 이재희위원 외 3인으로부터 회기연장의 건이 제안되었고 휴회기간 중에는

교육부장관 면담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연장의 건

(14시 06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의사일정안에 의하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5월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의사과장의 보고에서도 있었다시피 이재희위원 외 3인으로부터 교육부장관 방문 일정을 고려하여 회기를 1일간 연장하자는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기결정의 건 외에 회기연장의 건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미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서 두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당초 계획된 5일간에 1일을 연장하여 금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되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는 교육부장관 면담과 현지확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9일 개최하고 1일을 연장하여 5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다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6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안

4. 19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4시 06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학년도 국·중학교 설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1996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을 말씀드리면 대단위 택지개발과 주택건축으로 교육인구의 집중에 따른 학생수용과 과대학교 분리 및 2부제 수업발생을 예방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설립계획중 신설학교는 청주시에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와 제천시에 국민학교 1

개교, 총 5개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민학교는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 지구내의 36학급 규모의 가칭 용암국민학교와 용정국민학교를, 제천시 신백동 산 30번지에 30학급 규모의 가칭 동현국민학교를, 중학교는 청주시 산남동 제2 택지개발지구내의 30학급 규모의 가칭 산남중학교와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에 36학급규모의 가칭 방서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학생수용계획 중 국민학교는 청주시 용암동 택지 개발지구내에 95년 3월 1일 이전 예정인 교동국민학교의 과대화를 예방하고 연차적 주택건축계획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고자 가칭 용암, 용정국민학교 신설이 불가피하며 가칭 동현국민학교도 남천국민학교의 과대화 예방과 주변의 아파트 건축으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중학교 학생수용계획으로는 가칭 산남중학교와 방서중학교는 청주시 제1학군으로서 1학군의 소속인 청주남중, 청주여중, 청주동중, 청운중, 남성중의 과대화를 예방하여 적정규모의 학교를 조정하고 택지개발지구내 중학생을 수용하고자 신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5개교의 소요부지 66,169㎡의 매입비로 155억8,939만4,000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연내에 매입을 완료하고 또한 설계용역비 3억2,000만원도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연내에 설계를 완료토록 할 것이며 건축비는 총 175억2,020

[제38회-제1차]

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설학교 위치도를 첨부하였으나 자세한 것은 현장방문시 설명이 있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96학년도 국·중학교설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1996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안: 별첨2
(끝에 실음)

이어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내에 폐지학교 65개교 중 장기학생수용계획 및 인구이동 전망, 교육목적 및 주민복리 사업 등에서의 재활용가능여부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폐교 10개교를 매각하여 교육시설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19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별첨3

(끝에 실음)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설명되셨죠?

(관리국장 “예”하고 대답)

예,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거친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긴히 질의하실,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고 또 현장 확인 전에 이 실정이 더 소상히 아실 이런 필요성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 위원 질의하시죠.

● 권혁풍 위원

제가 조금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그 관계법령이 나오는데 이거 미리 제가 좀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못해봐서 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34조, 거기보면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시행령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찾아보질 못해 그래서 여쭙보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그 취득

이라든가 관리처분의 방법이 어떻게 됐는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의장 관리국장을 향해)

저, 전수 답변 있다 하세요.

(관리국장 “예”하고 대답)

예, 박병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여기 사유를 보면은 ‘보존 불필요’ 이렇게 하고서 그 용도는 또 ‘시설사업비 투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설사업투자 이렇게 돼있는 것은 각 지방교육청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쓴 겁니까, 여기 교육청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의장 김영세

또 그 하나뿐입니까?

(박병해위원 “예”하고 대답)

● 권혁풍 위원

제가 아까 다 못드렸는데, 말씀을…….

● 의장 김영세

예.

● 권혁풍 위원

또 한가지 그 국중학교설립계획안 거기에도 역시 그 참고사항에 그 근거법령이 나오는데 ‘교육법 82조 설립자’ 하고 ‘교육법 시행령 53조 학생수용계획’ 그렇게만 나와있지 그 내용이 나와있질 않아서 시간이 있으면 제가

미리 좀 봤으면 좋을 걸 미처 보지 못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문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저기 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질문을 다 받으시고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만 우선 다 접수를 하세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의장 김영세

예, 또 이재희위원 질의하세요.

● 이재희 위원

제가 먼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인제 폐교학교 10개를 매각처분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원매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인제 임의 처분을 하는데 형식은 공개입찰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유찰이 되고 그래서 수의계약가능성이 많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폐교학교 그 매각은 이 공고를 더 아주 광범위하게 좀 피알(PR)을 하든지 아니면 연중에 뭐 4월이나 10월이나 이 기간을 잡아가지고 그때만 이렇게 임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제도를 만들어놓으면은 오히려 우리 교육재산 매각하는데 상당히 더 그 재정적으로 이득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계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내가 한가지 하겠어요.

이 저 국중학교설립계획안중에 우리 나름대로 그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96학년도에 가서 청주여중이 16학급이 감축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행 이 설립계획안대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46클래스에서 청주여중이 30클래스로 줄으면 16개교실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오히려 신설학교를 더 늦춰가면서 이 학구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장차 어떤 이 학교설립에 따라서 학구조정을 재조정할 용의가 있다든지 또는 청주여중이 남녀공학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이런 복안이 있는가 이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그러면은 어떻게 답변준비 시간을 좀 드릴까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시간을 좀 주시죠.

● 의장 김영세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회의계속)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교육부에 긴급한 용무가 계셔서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77조, 또 동시행령 84조 이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대한 내용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관리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계획과 처분결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낭독을 해올리겠습니다.

제1항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항 “법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처분결과의 보고 범위, 서식등에 관하여는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지금 낭독해 올린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법 제82조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교육법 제82조 설립자,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경영한다.” 제2항 “법인 또는 사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지금 낭독해 올린 것이 교육법 제82조입니다.

다음에 교육법시행령 제53조입니다.

학생수용계획 제1항 “교육감은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지휘·감독하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학년도 개시 2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학생수용계획이 학생수용 전망 등에 비추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지금 낭독해 올린 것이

교육법 시행령 제53조 학생수용계획입니다.

다음에 박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재산에 대한 지역교육장의 요구가 있는 것이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정한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폐지학교의 모든 재산권 행사를 저희들이 지금 지역교육청에 위임을 해가지고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계획 및 이의 시설재투자 계획 이런 모든 것이 지역교육청의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번에 올라온 이 매각계획도 지역교육청의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을 양고 일단 저희들이 지역교육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교육장이 매각을 해서 시설재투자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저희들한테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희위원님께서 그 “폐지학교 매각 및 임대시기를 일정시기에 정하여 실시함이 교육재정운영에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이 매각 및 임대는 그 요구자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교육청에서 이를 수합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매각승인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이 일정한 시기를 정해가지고 하는데에는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제38회-제1차]

있습니다.

사업에, 그 지역교육청의 사업시기등을 봐서 원매자가 또 있을 때 얼른 팔아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사람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것이 저희들이 팔려고 해도 또 사가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시기를 딱 정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재정운영에 이게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여중 문제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교육법 시행령에서도 수용계획에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22개월 전에 수용계획을 학년별로 이게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여중의 경우는 저희들이 7학급이 96년도에는 감축이 되서 30학급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게 7학급씩 남아가지고 21학급이 완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2개월전에 그걸 조정해서 수용계획을 학년별로 조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학생수용계획이 반드시 금년

에 7학급을 감축한다고 해서 내년에 7학급이 감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암지구내에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국민학교는 2,500세대당 1개교, 중학교는 5,000세대당 1개교를 그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 지역으로다가 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설정하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암지구에 지금 1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2,300세대가 1차 계획개발동안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먼저 95년도에 1개교를 중학교를 세울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96년도에 다시 두번째로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용암 제2지구를 또 개발을 할 계획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학교의 설립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여중에 학급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용계획에 매년 매년 22개월 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감안을 해서 청주여중에 교실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그 활용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어려운 점은 용암지구내 학교를 세우지 않으면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이쪽으로 수용할 만한 그런 학군 조정이 굉장히 어

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은 현지에 가보시면은
위원님들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학교를 세
우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학교의 잉여교실이
남는 것을 알면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첨언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추가 질문있으신 분 질문하시죠.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박병해 위원

여기 이 도표 여기에 제천의 동헌국민학교
는 이 지도상으로 봐서 북쪽이 어느 쪽입니
까?

이 표시가 없어.

맨위에, 맨위에 첫장에 표시된 대로 그대로
쪽 내려가는 걸로 보는 것인가?

● 관리국장 신재철

예, 북쪽이, 위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이 동헌국민학교는 제천 그 농고 그 앞쪽으
로 해가지고…….

(관리국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이게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여?

(관계직원 '광산공고' 라고 대답)

예, 광산공고있는 쪽 그쪽이 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박위원님 되셨습니까?

(박병해 위원 “예”하고 대답)

예,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시
면…….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아까 의장님께서 청주여중문제에 관해서 질
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세심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잉
여교실이 많이 남지 않도록 배려를 좀 해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더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
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5시 00분)

● 의장직무대행 이상일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
다.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응복위원님, 김광
수위원님 두분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응복, 김광
수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두분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회후 '96학년도 청주관내에 신설예정인 학
교부지를 방문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8회-제1차]

<p>아울러 5월 20일 교육부장관 면담과 5월 21일, 23일의 현장방문에도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p>	<p>이상으로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p>
---	---

○ 출석위원 : 11명

의 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 원 이재희,	위 원 흥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0명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1

○ 1996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안 : 별첨2

○ 19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별첨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1994년 5월 24일 (화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1996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안
2. 19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1996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안
3. 19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들으시고, 현지확인을 하셨던 '96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안과 19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과보고

(11시 01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2. 1996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안

(11시 02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학년도 국·중학

교 설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학교 설립계획안입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96학년도 국·중학교 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

(11시 03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세요.

● 권혁풍 위원

제가 근거법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법 77조, 이것에 대한 그 의문이 나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하게 된 그 배경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주민의 의사를 가장 참 적절하게 반영을 시킨다하는데 그 지방자치의 아마 그 본 취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법률의 해석도 역시 그런쪽으로 주민의 의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어 되지 않느냐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조를 보면, 지방재정법,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팔 호치고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괄호 닫고, 를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하는 것이 1항이고,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관리 처분 결과를 심사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1항과 2항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여러가지 그 예산과 사업소정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 세워진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괴산 일대를 4학교를 돌아보고서 느낀 점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학교를 세울 당시에 그 학교에 참 부지를 희사한 사람이라든가, 혹은 그 주변에서 여러가지 그 생활상에 연고, 물론 연고권자라는 것은 법률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연고권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에 보이지 않는 그 연고권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뿐아니라 이것이 국가기관한테 어떤 그 계약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 아니고, 기타 어떤 그 사인에게 매도가 될 때, 혹시 그 어떤 그 기피시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할때 그 주민들의 그 위화감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주민의 의사에 최대한 그 반영이라는 이러한 그 취지에서 볼 때, 그리고 그 아무리 국가재산이 됐다하더라도 그 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눈에 안보이는 그 연고권,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어디까지의 연고권자의 한계를 정한다든가 그런 기피시설을 규정한다든가, 어떠한 시설은 이건 주민의 생활에 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매각할 수 없다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그 규정을 계획에다 세워서 즉, 응찰자격에 제한을 두어 가지고서 이것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서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우리가 법률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집행부의 유권적인 해석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저 관리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바로 답변가능하다고 말함)

예.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기피해야할 이러한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걸 사전에 의회에 안건으로 낼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조문의 해석상 문제가 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계약을 나중에 그 폐교재산을 입찰을 봐서 매각을 해가지고 계약을 당사자하고 체결할 때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조건으로 계약조건에 집어 넣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할수가 없다. 이러이러한 사항을 할 때에는 그 계약을 나중에 무효로 한다는 이런 특약사항을 넣기 때문에 이건

행정사항으로 저희들이 할 문제지 이것을 의회에 저희들이 의안으로 제출할 때에 이러한 안까지 내놓는 것은 조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권혁풍 위원

제가 그 “처음부터 의안에다 왜 내지 않았나?”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그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법에는 아마 그렇게 세부적으로 돼있지 않을 겁니다.

‘어떠어떠한 시설은 기피시설이다.’ 또 ‘어떠한 사람은 연고권자가 있다.’ 이런 것은 아마 법에는 없는데 이것을 계획서에다가 어떠한 사람은 연고권자가 좀 있다든가, 어떠한 사람은 그 기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넣어서 우리의 의결을 거치면은 이게 참 집행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질문을 드린 거지 왜 계획에다 그런 걸 안 넣느냐 하는 그런 추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사안이 공개롭게 지금 그 어제 다녀오신 괴산 지구에도 그런 사항이 한 건이 좀 나왔다고 해서 지금 그런 말씀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교육장이 의안으로 저희들한테 이것을 제출해다오 서류가 올라올 때는 충분히 그 지역에서 그러한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 폐교 학교를 매각을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안으

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한 이런 데는 문제점이 있다하는 것을 의안에다가 집어넣고 하기는 조금 입장이 좀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참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질문이나 답변이나 결국은 우리가 이 매각재산이 주민한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좋은 면으로 활용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권혁풍위원이 질문한 것은 아주 그 매각범위를 사전에 정해가지고 나중에 매각 후에도 이것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이러한 혐오감을 주지 않는 이러한 데로 활용되는 걸 미리 아주 규정지어서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사실은 집행청에서도 이제까지 그 주민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것이 처분되야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매각이 안되고 이제까지 미뤄온 겁니다.

그래 뭐 집행청에서는 그것을 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관리국장 "예"하고 말함)

계약조건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의견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의견이니까, 지금 현재는 이미 이 안에는 안들어왔지만서도 반드시 처분할 적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계약 조건에 꼭 삽입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해서

이렇게 참작을 해주세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렇게 하면은 뭐 권위원 양해되지겠조?

다음서부터 우리가 더 사전에 더 우리가 확인하고요.

● 권혁풍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아주 관리계획에다 그걸 넣었으면 어쩌냐 하는 그런 뜻에서 여기 관리계획, 계획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 의장 김영세

권혁풍위원의 질문도 뭐 올바른 타당도가 있는데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매각대상을 미리 예정을 하고서 하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좀 올 겁니다.

그런 것이 그 보지 않게시리 잘.....

과거에 우리가 이제까지 재산들이 이제까지 처분 못한 이유는 역시 좋은 면으로 활용되게 선용되게 하기 위해서 매각못한 걸 겁니다.

(관리국장 "예."하고 말함)

앞으로도 역시 학교가 선 위치만큼은 앞으로 역시 교육적으로나 또 주민의 공익성이 주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활용이 되도록 입찰조건에 그것을 첨부하면 될거예요.

(관리국장 "예."하고 말함)

예, 그렇게 활용해주시고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권혁풍위원 "예."하고 대답)

그러면 뭐 다른 질문사항 없으시조?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다른 의견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뭐 의의없으시조?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의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타사항

(11시 15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38회.....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 박병해 위원

통과가 되고 나서 기타사항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 의장 김영세

뭐 참고 사항이 됩니까?

● 박병해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그럼 예, 말씀하세요.

● 박병해 위원

지금 이 통과한 것하고는 무관한 얘깁니다.

다만 그 건의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매 각학교의 그 주변 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그 유지 기타 지역출신의 그 군의원 이런 분들과 그 의견을 교환을 해봤더니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가 학교가 매각되는데 대한 그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아주 대단한 애착심과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둘째번에는 가능하면 자기들의 부락에서 입소해서 관리를 했으면하는 이 요망이 아주 간절하게 있었고, 셋째번에는 매각된 그 금액을 그 면의 중심학교 등에다가 교구를 다수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할애해줬으면, 그러면은 그 지방교육의 충실을 기하면서 동시에 서운한 감, 허탈한 감, 내지는 혹시 반발을 할 수 있는 심리같은 이런 것도

무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었으면은 이런 그 유지들의 건설적인 이런 요망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육위원들이 우리가 다닌 분들도 이러한 그 요구사항에 꼭 찬성을 하고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렇게 돼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당국에서는 이것을 십분 좀 연구를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많이 호응을 해줬으면 이렇게 건의 말씀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요거 집행청에서 참작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의견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폐회)

○ 출석위원 : 11명

의 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 원 이재희,	위 원 흥신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김학묵,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박용두,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 1996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안 : 별첨2

○ 1994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별첨3

(별첨 1)

議 事 日 程(案)

第 38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臨 時 會)

1994. 5. 19 - 5. 24 (6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4.5.19(목) 11 : 00 14 : 00	※ 교육위원 협의회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6학년도 국·중학교 설립계획안 제안설명 3. '94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제1차 본회의 산회 】 ※ 의안관련 현장방문 - 청주	회 기 (연장회기 1일 포함) 5.19 - 5.24. (6일간)
5. 20(금) - 5. 23(월)	【 본회의 휴회 】 ※ 의안관련 현장방문(5.21, 5.23) - 제천, 옥천, 영동, 괴산	※ 교육부장관 면담(5.20)
5. 24(화) 11:0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96학년도 국·중학교 설립계획안 의결 2. '94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 【 제2차 본회의 산회 】 ※ 폐 회	

(별첨 2)

의안 번호	제 38-1 호
의결년월일	1994. 5. 24. (제 38 회)

'96학년도국·중학교설립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4. 5. 10.

'96학년도국·중학교설립계획안

=====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199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설립목적

-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 주택 건축으로 인한 교육인구의 집중에 따른 학생수용
- 과대학교 분리 및 교육여건 개선 도모

□ 설립계획

- 신설학교 현황

학 교 급 별	교육청	학 교 명 (가 칭)	위 치	개교 예정 학급	완성 학급	개교예정 년 월 일	설립별
국	청 주	용암국민학교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	36	36	'96. 3. 1.	공 립
		용정국민학교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	36	36	'96. 3. 1.	"
	제 천	동현국민학교	제천시 신백동 산 30	30	30	'96. 3. 1.	"
중	청 주	산남중학교 (남·여공학)	청주시 산남동제2 택지개발지구내	10	30	'96. 3. 1.	"
		방서중학교 (남·여공학)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	12	36	'96. 3. 1.	"

0 학생수용계획

- 국민학교

학 교 명 (가 칭)	수용계획			소요교실수				관 련 학 교 현 황				
	학급수	학생수	급당 평균	보 통	특 별	관 리 실	계	학 교 명	분 리 전		분 리 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용암국교	36	1,420	39	36	5	3	44	교동국교	60	2,700	36	1,443
용정국교	36	1,438	40	36	5	3	44					
동현국교	30	1,182	39	30	5	3	38	남천국교	49	2,021	29	1,099

- 중 학 교

신 설 학교명 (가칭)	수용계획 (1학군)					관 련 학 교 현 황				
	남 여 별	진 학 희망자	소 요 학 급 ①	'95. 학 급 ②	과부족 ①-②	학 교 명	분리전학급		분리후학급	
							1학년	전 체	1학년	전 체
산남중	남	2,513	51	47	△ 4	청주남중	12	33	8	29
						청주여중	12	35	7	30
방서중	여	2,319	47	45	△ 2	청주동중	13	36	9	32
						청운중	14	35	9	30
						남성중	9	36	6	33
						용암중	9	21	8	20
						세광중	8	24	8	24
						운호중	6	18	6	18
						충북여중	6	18	6	18
일신여중	9	27	9	27						
계		4,832	98	92	△ 6		98	283	76	261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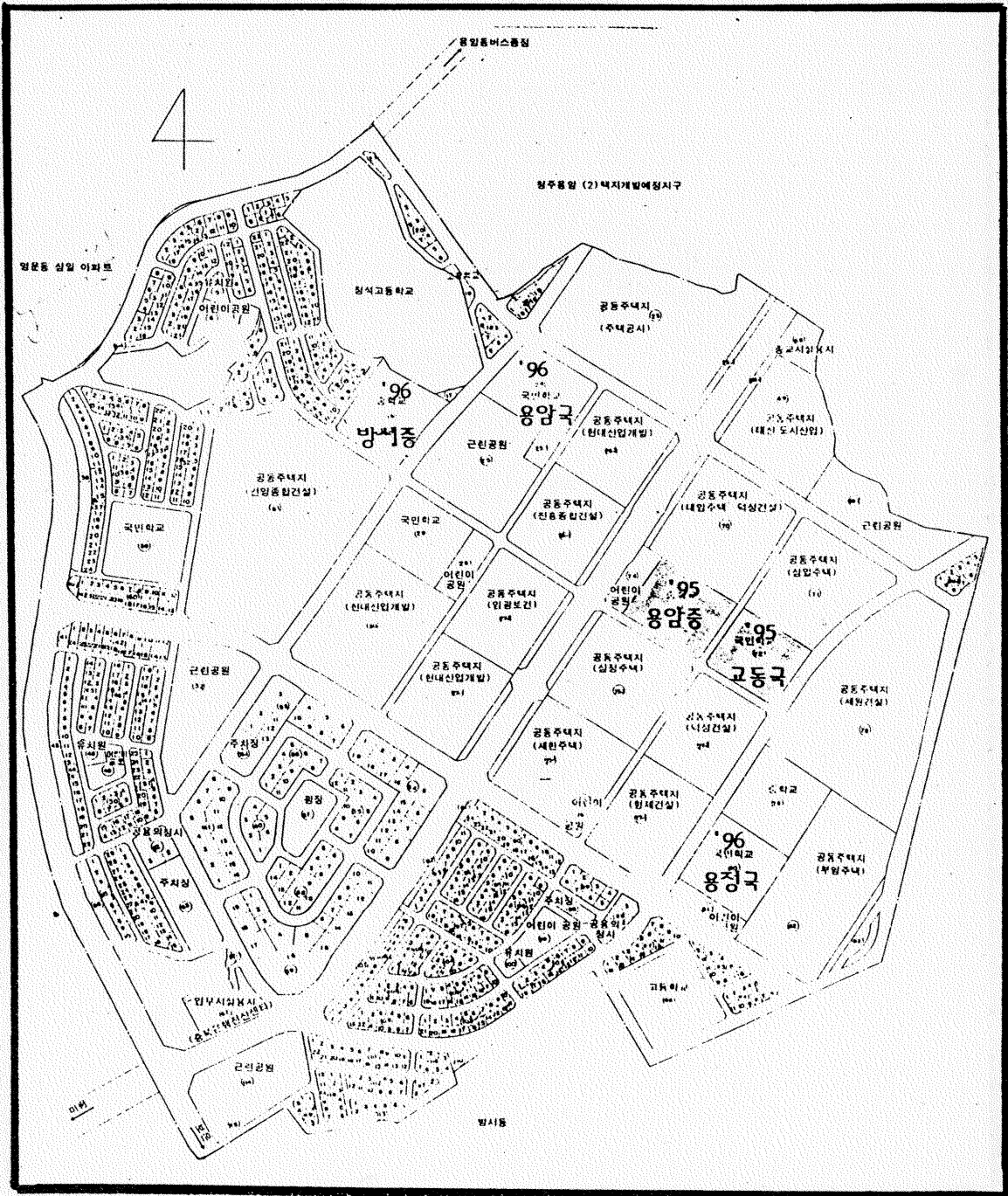
학 교 급 별	교육청	학 교 명 (가 칭)	부 지		건 축 비 예 정 액	계
			면적(m ²)	금 액		
국	청 주	용암국교	11,916	2,693,016	3,544,419	6,237,435
		용정국교	11,853	2,678,778	3,423,452	6,102,230
		제 천 동현국교	18,000	1,980,000	3,158,956	5,138,956
	소 계	3 교	41,769	7,351,794	10,126,827	17,478,621
중	청 주	산 남 중	12,000	4,195,200	3,517,408	7,712,608
		방 서 중	12,400	4,042,400	3,875,970	7,918,370
	소 계	2 교	24,400	8,237,600	7,393,378	15,630,978
합계		5 교	66,169	15,589,394	17,520,205	33,109,599

※ 부지는 '94년도중에 매입 완료하고, 건축비는 '95년도 당초 교특예산에 반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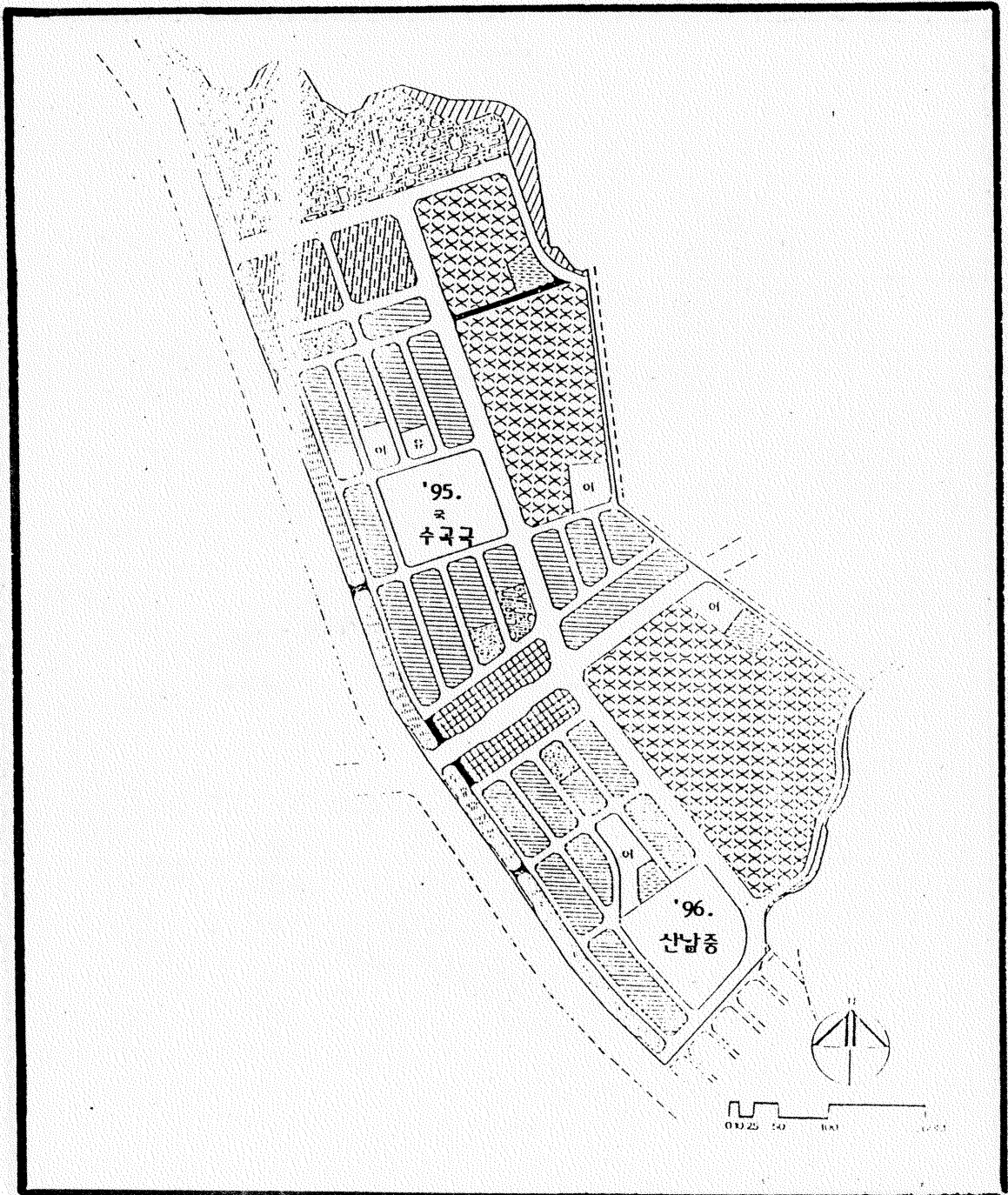
□ 참고사항

- 신설학교 위치도 3부.
- 근거법령
 - 교육법 제82조(설립자) 제1항
 - 교육법시행령 제53조(학생수용계획)

'96. (가칭)용암,용정국,방서중 위치도



'96학년도 (가칭) 산남중 위치도



1 / 2

의안번호	제 78 - 호
의결월일	1994. 5. 회 (제 회)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2 회 변경경계 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4. 5. 10.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38-2
----------	------

제출년월일 : 1994. 5. 10.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상기관 : 지역교육청
 - 변경내역
- 취 득

(단위 : m²/천원)

구분	당		초		변		정		증		감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토지	85,402.0	18,029,498	85,402.0	18,029,498					0		0
건물	57,747.37	29,174,556	57,747.37	29,174,556					0		0
공작물	107 식	4,033,380	107 식	4,033,380					0		0
계		51,237,434		51,237,434							0

- 처 분

(단위 : m²/천원)

구 분	당		초		번		정		감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토 지	72,458.5	9,520,576	170,309.5	9,602,731	91,851.0	82,155				
건 물	15,364.65	824,827	23,107.17	1,619,465	7,742.52	794,638				
공 작 물	52 식	43,128	90 식	81,931	38 식	38,803				
계		10,388,531		11,304,127		915,596				

- 유상사용허가

(단위 : m²/천원)

구 분	당		초		번		정		감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토 지	661,445.87	122,579	661,445.87	122,579	0	0				
건 물	20,939.37	120,490	20,939.37	120,490	0	0				
공 작 물	12 식	1,360	12 식	1,360	0	0				
계		244,429		244,429		0				

- 무상사용허가

(단위 : m²/천원)

구 분	당		초		번		정		감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토 지	11,690.0		11,690.0		0	0				
건 물	1,133.1		1,133.1		0	0				

□ 제안 근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내역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내역

(단위: m²/천원)

제천 교육청

구분	재산별	학교명	사업명	당		변		정		증		사	유	비 고 (내역)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매각	토지	금성중 전분교	폐교재산 매각		6,816.0	2,910	6,816.0	2,910	2,910	2,910	2,910	○ 보존 불필요- 시설사업투자		10-11쪽
		화당중 학문교	"		9,166.0	2,217	9,166.0	2,217	2,217	2,217	2,217	○		12-13쪽
소	건물	금성중 전분교	폐교재산 매각		15,982.0	5,127	15,982.0	5,127	5,127	5,127	5,127			
		화당중 학문교	"		944.38	146,726	944.38	146,726	146,726	146,726	146,726	○		12-13쪽
소	공작물	금성중 전분교	폐교재산 매각		1,184.35	222,495	1,184.35	222,495	222,495	222,495	222,495			
		화당중 학문교	"		5 식	16,310	5 식	16,310	16,310	16,310	16,310	○ 보존 불필요- 시설사업투자		10-11쪽
소	소	합계		9 식	22,501	22,501	22,501	22,501	22,501	22,501	9 식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내역

(단위: m²/천원)

유치 교육청

구분	재산별	학교명	사업명	당		변	정		증		감	사	유	비 고 (내역)
				초	면		면	적	면	적				
매각	토 지	안 내 국 대동문교	폐교재산 매각	16,609.0	12,890	16,609.0	12,890	16,609.0	12,890	16,609.0	12,890	° 보존 불필요- 시설사업투자	14-15쪽	
		죽 군 향북문교		12,289.0	11,846	12,289.0	11,846	12,289.0	11,846	12,289.0	11,846	°	16-17쪽	
		증주 약소문교		9,271.0	5,533	9,271.0	5,533	9,271.0	5,533	9,271.0	5,533	°	18-19쪽	
소 계	건 물	안 내 국 대동문교	폐교재산 매각	38,169.0	30,269	38,169.0	30,269	38,169.0	30,269	38,169.0	30,269			
		죽 군 향북문교		864.33	53,051	864.33	53,051	864.33	53,051	864.33	53,051	° 보존 불필요- 시설사업투자	14-15쪽	
		증주 약소문교		905.74	89,292	905.74	89,292	905.74	89,292	905.74	89,292	°	16-17쪽	
소 계	공작물	안 내 국 대동문교	폐교재산 매각	739.04	74,994	739.04	74,994	739.04	74,994	739.04	74,994	°	18-19쪽	
		죽 군 향북문교		2,509.11	217,337	2,509.11	217,337	2,509.11	217,337	2,509.11	217,337			
		증주 약소문교		4 식	760	4 식	760	4 식	760	4 식	760	° 보존 불필요- 시설사업투자	14-15쪽	
소 계	소 계	안 내 국 대동문교	폐교재산 매각	3 식	4,142	3 식	4,142	3 식	4,142	3 식	4,142	°	16-17쪽	
		죽 군 향북문교		6 식	4,015	6 식	4,015	6 식	4,015	6 식	4,015	°	18-19쪽	
		증주 약소문교		13 식	8,917	13 식	8,917	13 식	8,917	13 식	8,917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내역

영동 교육청

(단위: m²/천원)

구분	재산별 토지	학 교 명	사 업 명	답		초		변		경		증		감	사 유	비 고 (내역)
				면 적	액 금	면 적	액 금	면 적	액 금	면 적	액 금	면 적	액 금			
매각	지	양 신 국 천태분교	폐교재산 매각			8,829.0	9,952	8,829.0	9,952	8,829.0	9,952	8,829.0	9,952	9,952	○ 보존 불필요- 시설사업투자	20-21쪽
	건	"	"			869.9	106,114	869.9	106,114	869.9	106,114	869.9	106,114	106,114	"	"
	공작물	"	"			1식	232	1식	232	1식	232	1식	232	232	"	"

'94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내역

(단위:㎡/천원)

구분	재산별	학교명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사유	비고 (내역)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매각	토지	외사국길본분교			2,687.0	995	2,687.0	995		○ 보존 불필요- 시설사업투자	22-23쪽
		문광국			13,595.0	12,494	13,595.0	12,494	○		24-25쪽
		수상분교			9,829.0	7,462	9,829.0	7,462	○		26-27쪽
		추삼분교			8,760.0	15,856	8,760.0	15,856	○		28-29쪽
소계				34,871.0	36,807	34,871.0	36,807				
건물		외사국길본분교			190.0	10,450	190.0	10,450		○ 보존 불필요- 시설사업투자	22-23쪽
		문광국			1,245.8	100,323	1,245.8	100,323	○		24-25쪽
		수상분교			757.02	71,132	757.02	71,132	○		26-27쪽
		추삼분교			986.34	66,787	986.34	66,787	○		28-29쪽
소계				3,179.16	248,692	3,179.16	248,692				

(단위:㎡/천원)

괴산 교육청

구분	재신별	학교명	사업명	담		경		증		사	비고 (내역)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매각	공작물	외사국길본분교	폐교재산 매각	1 식	101	1 식	101	1 식	101	○ 보존 불필요- 시설사업투자	22-23쪽
				4 식	6,409	4 식	6,409	4 식	6,409	○	24-25쪽
				5 식	545	5 식	545	5 식	545	○	26-27쪽
소계				5 식	98	5 식	98	5 식	98	○	28-29쪽
				15 식	7,153	15 식	7,153	15 식	7,153		

관계법령(부분)발췌서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의안번호	제22호
의결 년월일	1994. 5. (제 회)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2 회 변경 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4.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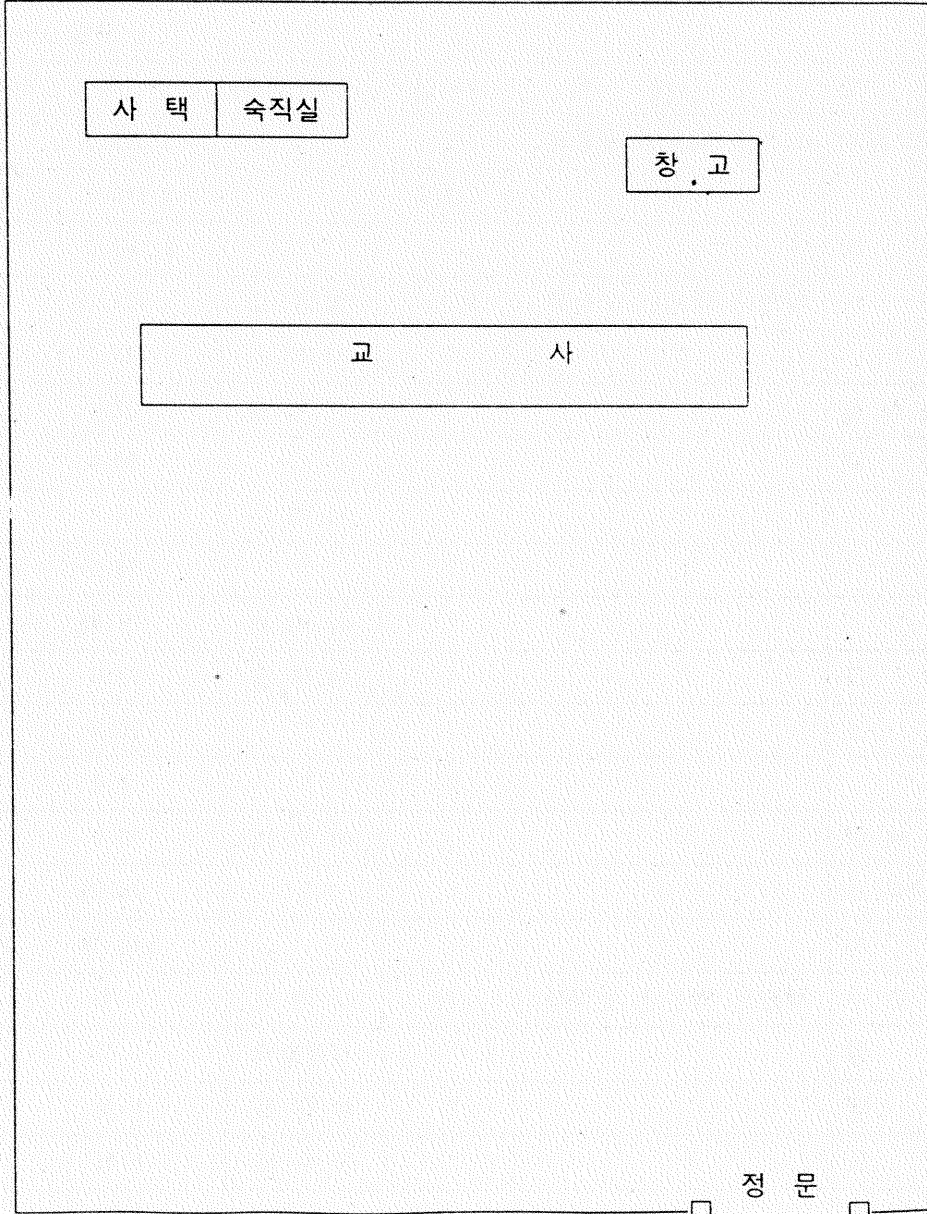
금성국민학교중전분교 처분대상 재산내역

=====

(단위 : m²/천원)

구 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 적	대장금액
토 지	학교용지	제천군 금성면 포전리	409-2	학	6,816.0	2,910
건 물	교 사	·	·	철.콘.슬	106.29	60,487
	사 택 및 실 숙	·	·	시.벽.슬	84.18	10,811
	창 고	·	·	철.콘.슬	49.5	4,471
	소 계				239.97	75,769
공작물	축 대	제천군 금성면 포전리	409-2	시 멘 트	1 식	9,200
	하 수 구	·	·	·	1 식	2,400
	포 장	·	·	·	1 식	4,110
	문	·	·	·	1 식	200
	수 도	·	·	상 수 도	1 식	400
	소 계	·			5 식	16,310

금성국민학교중전분교처분대상재산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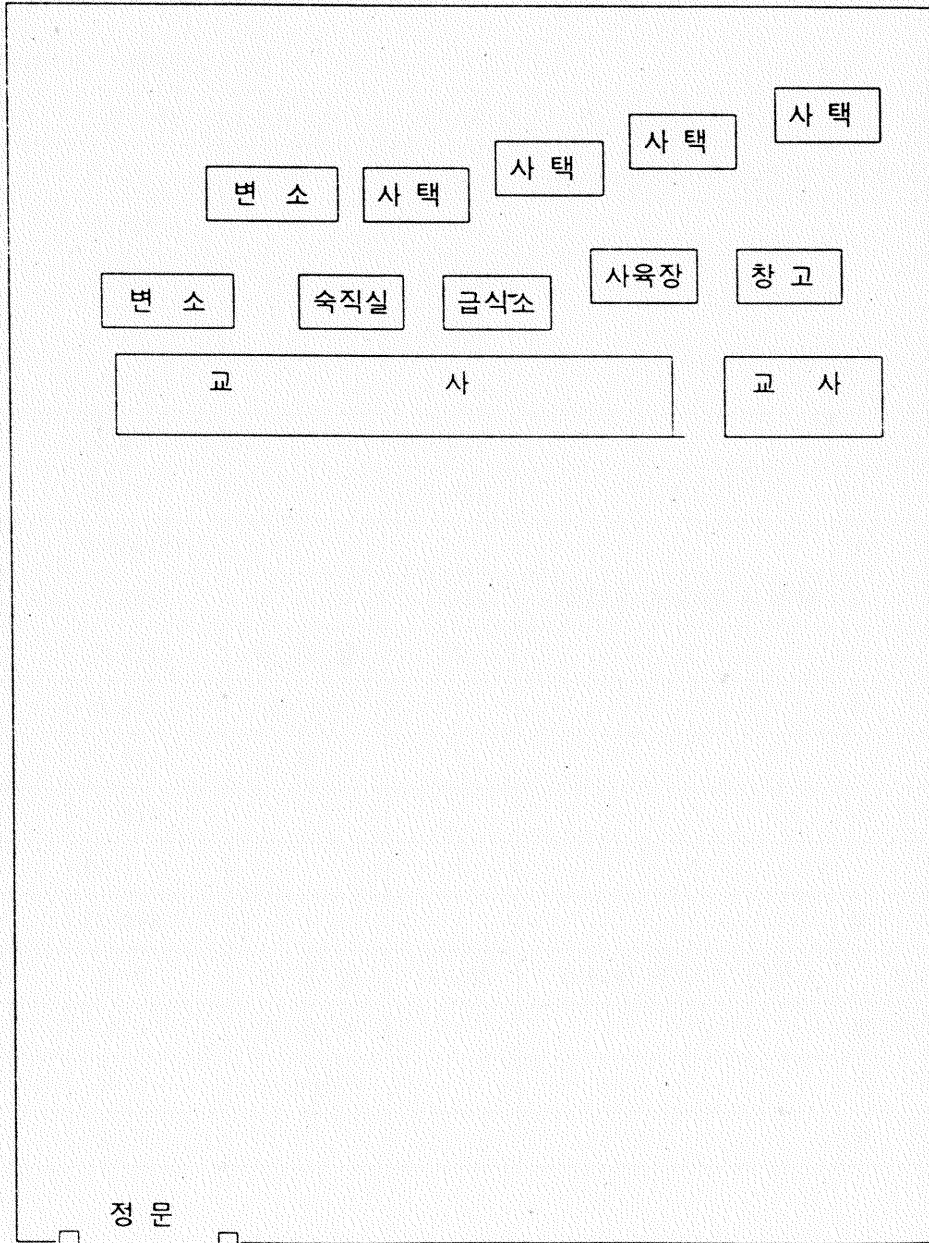
화당국민학교윤학분교 처분대상 재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 적	대장금액
토 지	학교용지	제천군 백운면 윤학리	313	학	6,386.0	1,545
	·	·	319-2	·	2,780.0	672
	소 계				9,166.0	2,217
건 물	교 사	제천군 백운면 윤학리	313	철.콘.슬	421.74	91,164
	·	·	·	시.벽.스	248.0	23,541
	숙 직 실	·	·	시.벽.슬	32.4	6,933
	사 택	·	·	·	30.0	2,723
	·	·	·	시.벽.와	60.0	10,008
	·	·	·	·	26.0	2,170
	·	·	·	시.벽.스	26.45	696
	창 고	·	·	시.벽.슬	32.0	5,817
	변 소	·	·	·	25.0	1,285
	·	·	·	·	8.0	1,816
	사 육 장	·	·	시.벽.스	10.0	107
	급 식 소	·	·	·	24.79	466
	소 계				944.38	146,726
공작물	하 수 구	제천군 백운면 윤학리	313	시 멘 트	1 식	1,329
	담 장	·	·	시멘블럭	1 식	706
	축 대	·	·	시 멘 트	1 식	1,656
	수 도	·	·	상 수 도	1 식	2,500
	소 계				4 식	6,191

화당국민학교운학분교처분대상재산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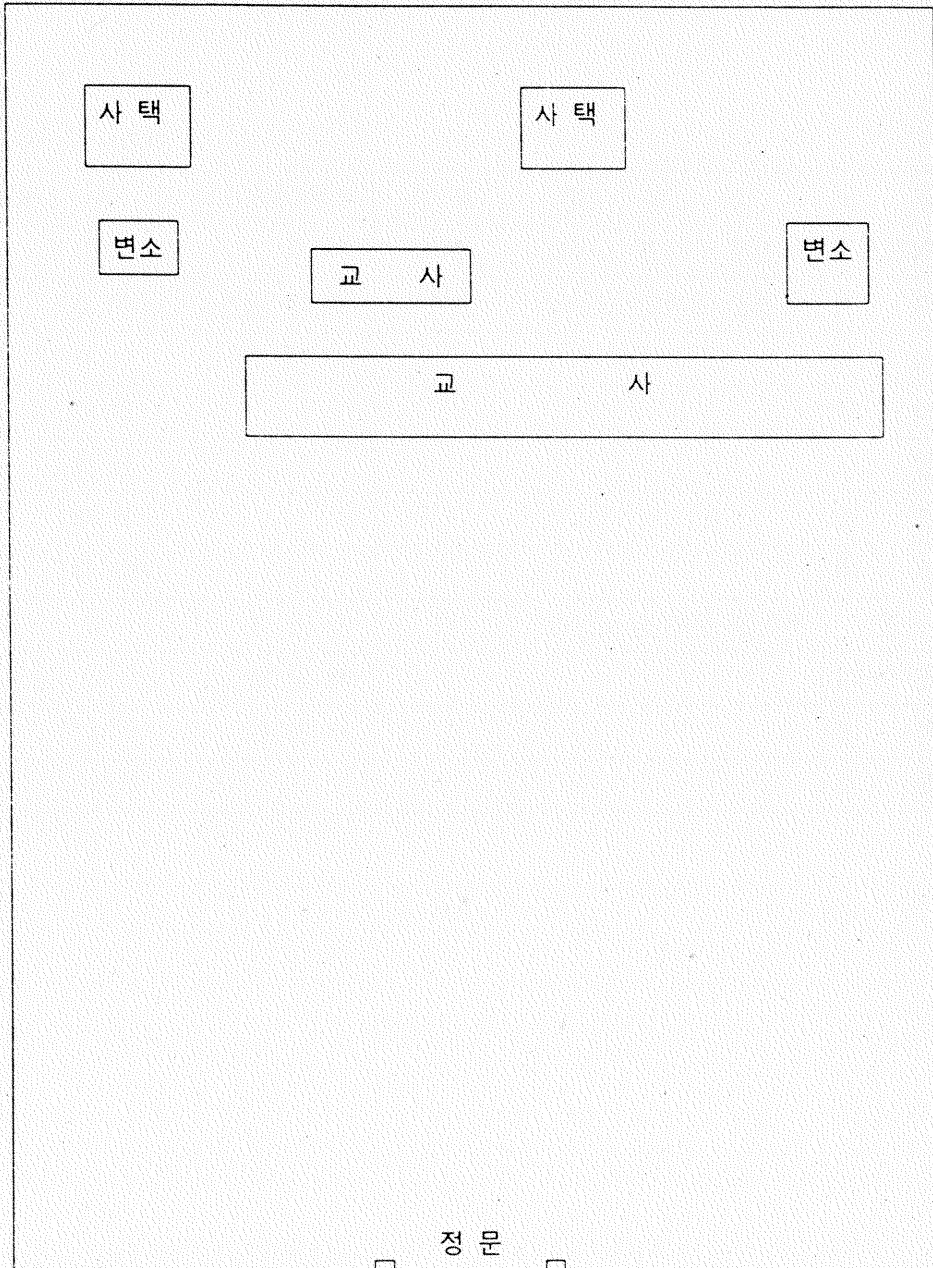
안내국민학교대동분교 처분대상 재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 적	대장금액
토 지	학교용지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394-9	학	43.0	64
	·	·	395-1	·	16,135.0	12,246
	·	·	426-3	도	60.0	81
	·	·	426-4	·	43.0	58
	·	·	427-4	·	175.0	236
	·	·	427-6	·	136.0	183
	·	·	427-7	·	17.0	22
	소 계				16,609.0	12,890
건 물	교 사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395-1	시.벽.슬	578.5	30,326
	·	·	·	철.콘.슬	180.1	15,436
	사 택	·	·	연와.스	39.6	1,028
	·	·	·	시.벽.슬	34.45	4,964
	변 소	·	·	·	29.7	878
	·	·	·	·	1.98	419
	소 계				864.33	53,051
공작물	문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395-1	철 골 조	2 식	146
	급 수 대	·	·	벽 돌 조	1 식	508
	지 정	·	·	자동펌프	1 식	106
	소 계				4 식	760

안내국민학교대동분교처분대상재산위치도

=====



죽향국민학교군북분교 처분대상 재산내역

(단위 : m²/천원)

구 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 적	대장금액
토 지	학교용지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245	학	12,289.0	11,846
건 물	교 사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245	철.콘.슬	770.25	75,056
	숙 직 실	"	"	시.벽.스	31.41	3,583
	사 택	"	"	"	34.22	3,797
	창 고	"	"	"	38.88	3,329
	변 소	"	"	"	30.98	3,527
	소 계				905.74	89,292
공작물	문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245	철골조	1 식	903
	급수대	"	"	벽돌조	1 식	1,334
	축 대	"	"	시멘트	1 식	1,905
	소 계				3 식	4,142

죽향국민학교군북분교처분대상재산위치도

사택

창고

숙직실

교사

변소

정문

증약국민학교추소분교 처분대상 재산내역

=====

(단위 : m²/천원)

구 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 적	대장금액
토 지	학교용지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665	학	8,174.0	4,879
	·	·	674-1	전	1,097.0	654
	소 계				9,271.0	5,533
건 물	교 사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665	철·콘·슬	603.31	59,680
	숙 직 실	·	·	시·벽·슬	31.37	3,799
	사 택	·	·	·	34.51	4,177
	창 고	·	·	·	38.87	3,549
	변 소	·	·	·	30.98	3,789
	소 계				739.04	74,994
공작물	문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665	철 골 조	1 식	903
	급 수 대	·	·	벽 돌 조	2 식	1,151
	하 수 구	·	·	·	1 식	665
	축 대	·	·	석 조	1 식	674
	포 장	·	·	시 멘 트	1 식	622
	소 계				6 식	4,015

증약국민학교추소분교처분대상재산위치도

변 소

창 고

숙직실

교 사

□ 정 문 □

사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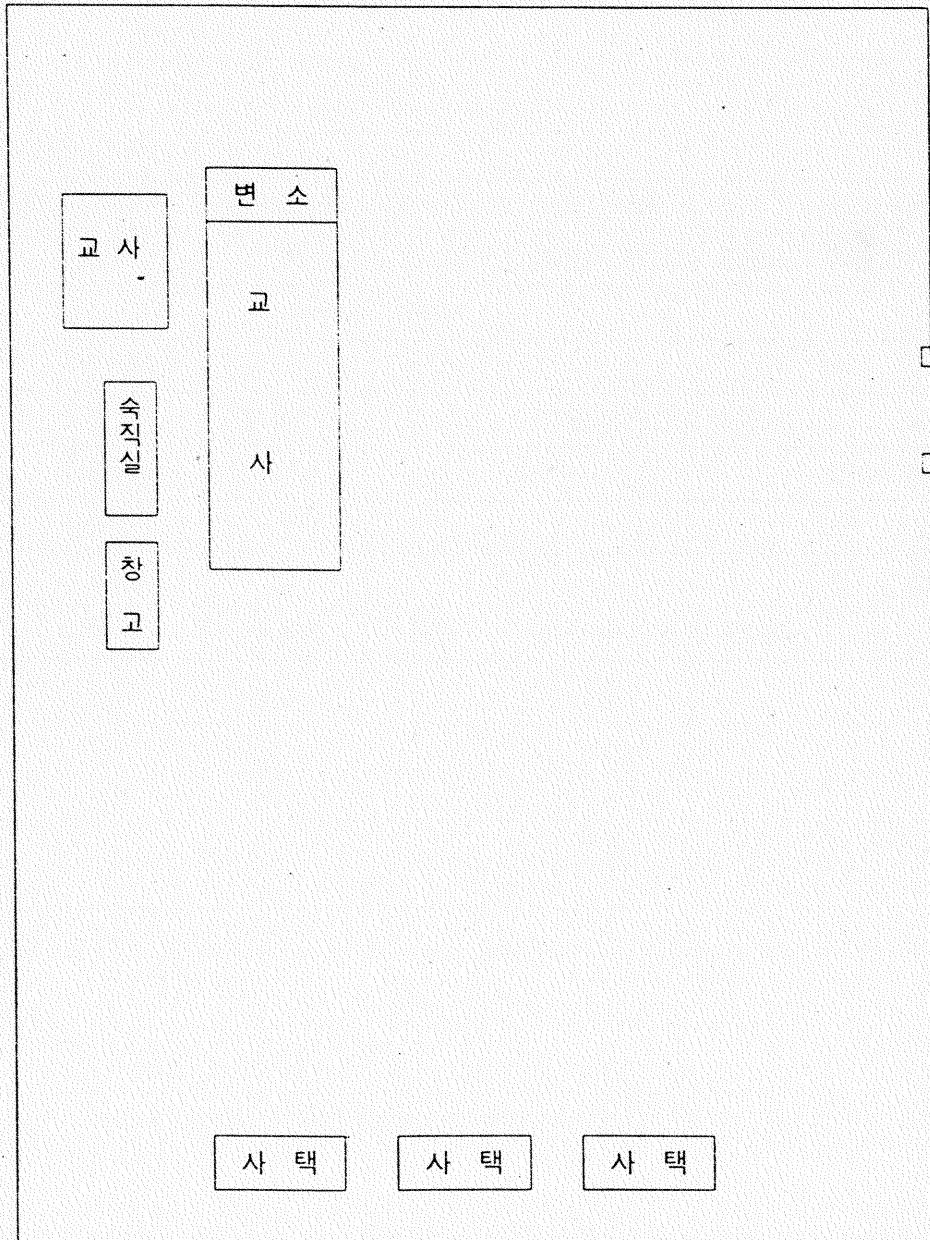
양산국민학교천태분교 처분대상 재산내역

=====

(단위 : m²/천원)

구 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 적	대장금액
토 지	학교용지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08-1	학	7,118.0	7,900
	"	"	709-2	답	1,203.0	1,539
	"	누교리	496-2	전	508.0	513
	소 계				8,829.0	9,952
건 물	교 사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08-1	철.콘.슬	509.5	57,523
	"	"	"	시.벽.슬	112.5	23,204
	숙 직 실	"	"	시.벽.스	38.6	1,630
	사 택	"	"	목 와	56.2	137
	"	"	"	시.벽.슬	26.4	1,841
	"	"	"	"	23.1	1,849
	창 고	"	"	시.벽.스	50.9	1,227
	변 소	"	"	시.벽.슬	52.7	18,703
	소 계				869.9	106,114
공작물	지 정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08-1	자동펌프	1 식	232

양산국민학교천태분교처분대상재산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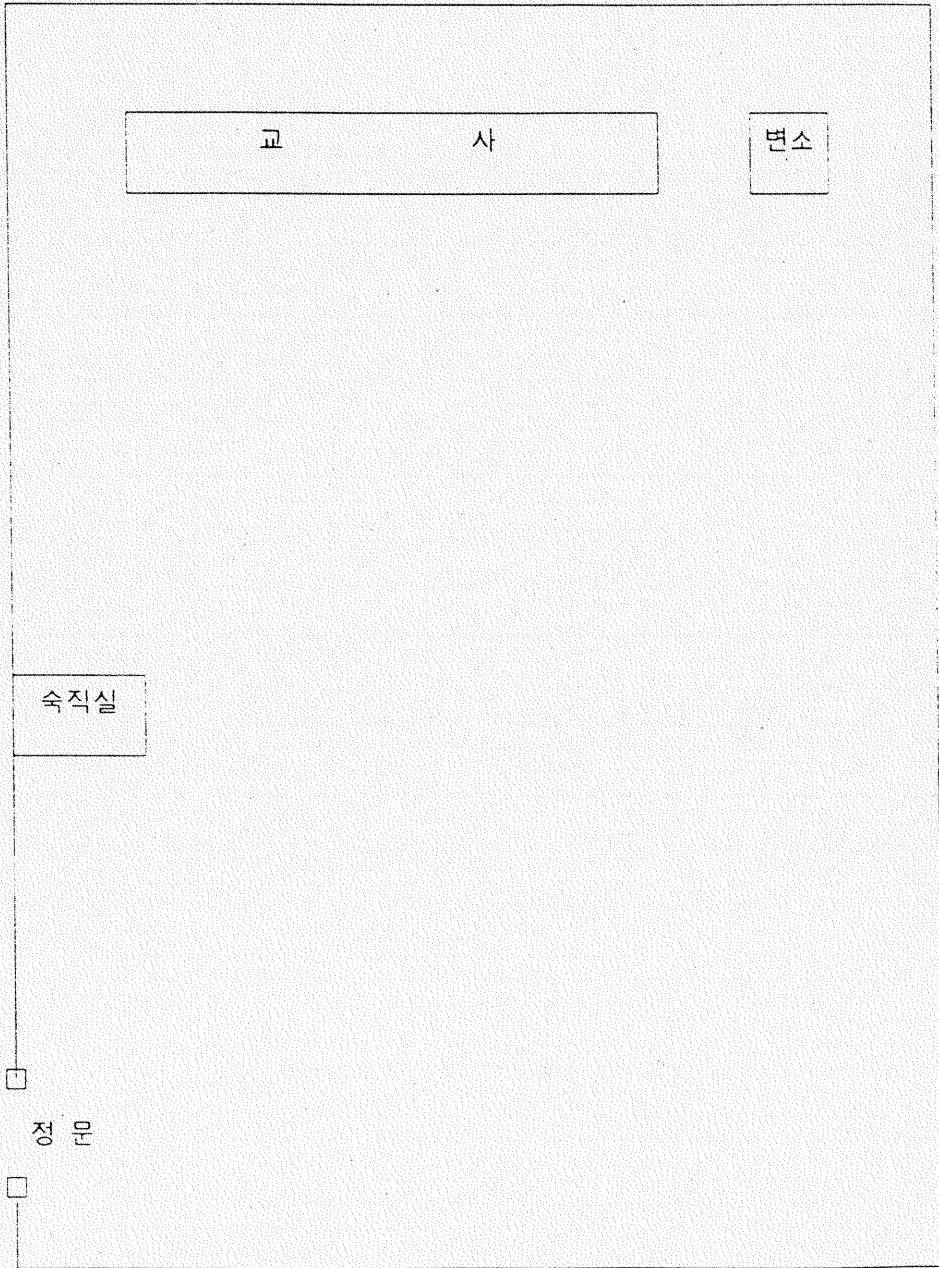
외사국민학교갈론분교 처분대상 재산내역

=====

(단위 : m²/천원)

구 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 적	대장금액
토 지	학교용지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101-2	학	516.0	191
	"	"	102-2	"	2,171.0	804
	소 계				2,687.0	995
건 물	교 사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102-2	시.벽.슬	145.0	7,975
	숙 직 실	"	"	"	29.0	1,595
	변 소	"	"	"	16.0	880
	소 계				190.0	10,450
공작물	문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102-2	벽돌조	1 식	101

외사국민학교갈론분교처분대상재산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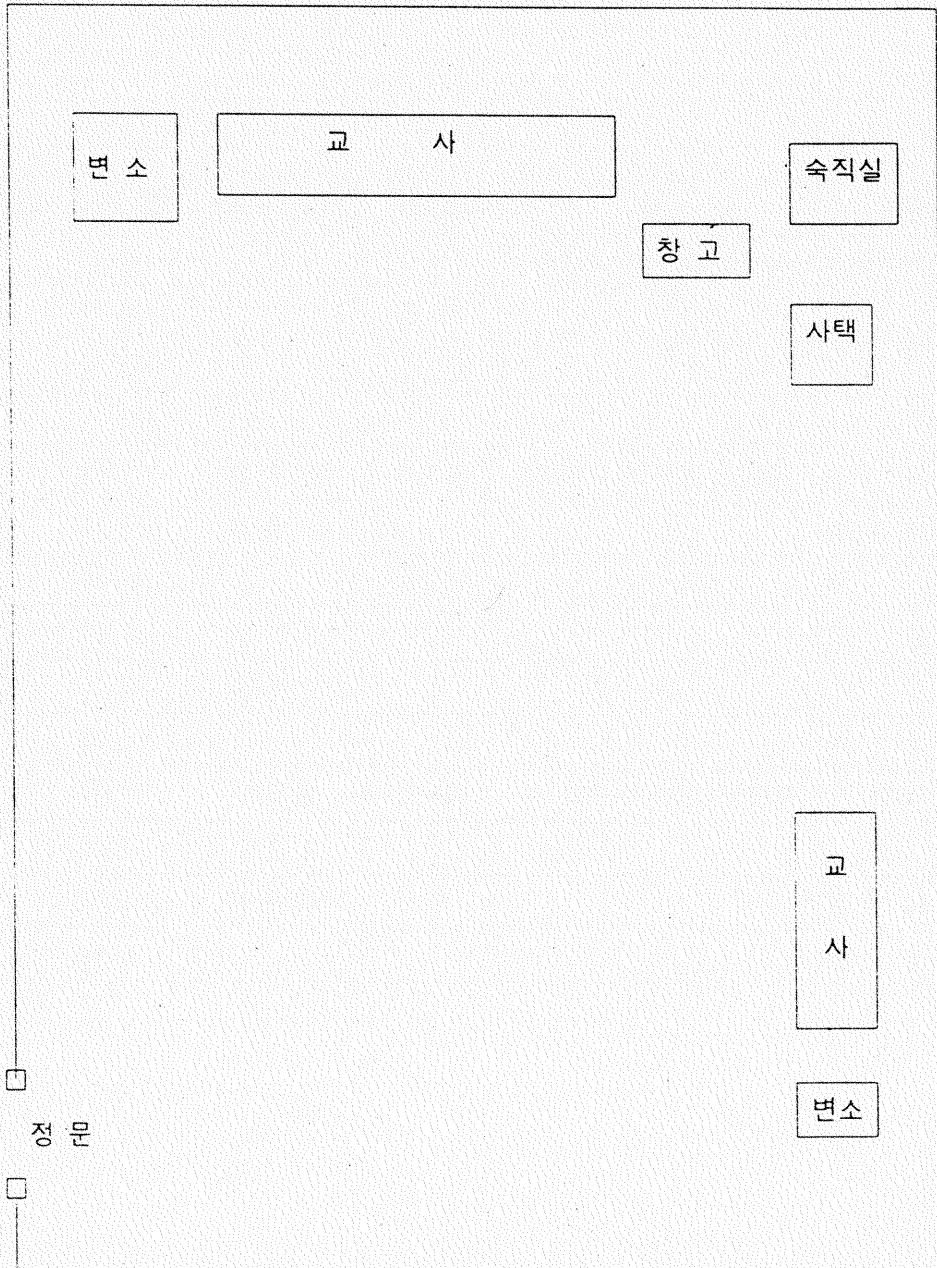
문광국민학교 처분대상 재산내역

=====

(단위 : m²/천원)

구 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 적	대장금액
토 지	학교용지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111	학	13,595.0	12,494
건 물	교 사	"	"	철콘슬	826.0	69,384
	"	"	"	시벽스	247.9	8,180
	숙 직 실	"	"	사벽슬	29.8	1,639
	사 택	"	"	"	59.5	12,948
	창 고	"	"	"	33	1,815
	변 소	"	"	"	29.8	5,565
	변 소	"	"	"	19.8	792
	소 계	"	"	시벽스	1,245.8	100,323
공작물	문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111	철골조	1 식	703
	담	"	"	조립식	1 식	3,434
	포 장	"	"	시멘트	2 식	2,272
	소 계				4 식	6,409

문광국민학교처분대상재산위치도



소수국민학교복상분교 처분대상 재산내역

=====

(단위 : ni / 천원)

구 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 적	대장금액
토 지	학교용지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238-3	학	8,546.0	6,487
	"	"	585-1	"	608.0	462
	"	"	633-1	"	675.0	513
	소 계				9,829.0	7,462
건 물	교 사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238-3	철.콘.슬	611.57	63,672
	숙 직 실	"	"	시.벽.슬	29.75	1,637
	사 택	"	"	"	52.89	2,433
	창 고	"	"	시.벽.스	33.06	1,753
	변 소	"	"	시.벽.슬	29.75	1,637
	소 계				757.02	71,132
공작물	문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238-3	철골조	1 식	35
	담	"	"	조립식	3 식	432
	지 정	"	"	자동펌프	1 식	78
	소 계				5 식	545

소수국민학교복상분교처분대상재산위치도

사택

숙직실

창고

변소

교사

정문

추산국민학교삼방분교 처분대상 재산내역

=====

(단위 : m²/천원)

구 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지목(구조)	면 적	대장금액
토 지	학교용지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304	학	8,760.0	15,856
건 물	교 사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	시.벽.스	495.8	19,832
	"	"	"	시.벽.슬	241.32	13,272
	숙 직 실	"	"	"	18.69	5,670
	"	"	"	시.벽.아	66.11	2,049
	사 택	"	"	시.벽.와	26.44	1,216
	"	"	"	시.벽.슬	58.18	13,380
	창 고	"	"	시.벽.스	62.8	3,768
	변 소	"	"	시.벽.슬	17.0	7,600
	소 계				986.34	66,787
공작물	문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304	철골조	2 식	39
	담	"	"	조립식	1 식	17
	지 정	"	"	자동펌프	2 식	42
	소 계				5 식	98

추산국민학교삼방분교처분대상재산위치도

